

#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2010. 5. 31 개정

제1조 (목적)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및 기타 발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발행물의 발행지침 수립, 투고논문 심사, 원고청탁 업무 및 기타 편집 및 발행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의 편집장을 겸임한다. 회원 중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동 전공분야에의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회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 약간 명과 본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학 혹은 관련 분야 전공 외국인 저명학자 약간 명을 편집위원장이 추천,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해외 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편집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후임 편집위원은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본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편집위원장에 의해 소집되고, 외국인 편집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투 고 규 정

2010. 5. 31 개정

### 1. 발행회수

본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의 공식적인 정기학술지로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영문판 학회지를 발행할 경우는 마지막 호를 택하여 한다. 본 학회지의 영어잡지명은 Korean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이며 공식 약어는 Korean J Oral Maxillofac Radiol로 한다.

### 2. 원고의 성격 및 종류

1)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원고이어야 하고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임상화보,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및 학회소식 등으로 한다.

2)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중복 출간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index.html>)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저자가 되기 위해서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

료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단체 저자로서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 한다.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 3. 사용언어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고, 한글 학술 용어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서 발간한 구강악안면방사선학 교과서의 색인집, 대한치과의사협회 편저 치의학용어집과 대한의사협회 편저 의학용어집의 최신판을 참고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확실치 않을 때는 그 용어가 최초로 사용될 때에 번역어 다음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시 원어를 표기한 다음 괄호에 약어를 쓰며 그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할 수 있다 (단, 표, 그림 및 사진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로 한다.)

### 4. 원고의 제출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고 및 사진은 각각 3부씩 제작하여 2부는 편집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저자가 보관한다. 혹은 원고 및 사진을 컴퓨터용 저장매체(CD, 디스켓, USB 메모리 등)에 저장하여 편집장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제출처

(우) 110-76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창경궁로 62-1

허민석

전 화 : 02-2072-3812

전 송 : 02-744-3919

E-mail : hmslsh@snu.ac.kr

### 5. 원고의 심의

투고된 원고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 6. 원저 작성의 일반적인 참고사항 및 저자점검사항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및 공저자 확인 양식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최종점검표와 함께 제출한다.

#### 1) 일반적 사항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표지, 내표지,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acknowledg-

ments), 참고문헌, 표 (Table), 사진설명, 사진. 각각은 새로운 쪽(페이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한글 또는 MS-Word)을 이용하여 A4 (21×31 cm) 용지에 작성하며 좌우 및 상하에 3 cm의 여백을 두어 작성한다. 줄 간격은 MS-Word의 경우 2줄, 한글의 경우 220%로 한다.
- 모든 원고는 초록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초록 이후의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 채택 후 최종 원고를 제출할 때 수정되거나 추가된 최종원고가 수록된 3.5인치 디스켓 또는 CD 1부(파일명, 제1저자명, 프로그램명 기록)와 프린트된 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한다. 혹은 최종 원고를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표지 및 내표지

-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논문의 제목,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와 소속 기관에 각각 “\*”, “\*\*”, “\*\*\*” 등을 위첨자로 동일하게 표시한다. 표지하단에 통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주소, 전화, FAX 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기록하고, 연구비 수혜 사항을 필요한 경우 기술한다.
- 내표지에는 원고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초록

- 한글과 영문원고에 모두 영문초록을 첨부하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각각 한 문단으로 기술한다.
- 다음과 같이 각 항을 분리하여 기술한다.

**목적 (Purpose)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두 문장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또는 대상)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였는가를 기술한다.

**결과 (Results) :** 전 문단에서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결론 (Conclusion)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한 두 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 약어 사용이나 참고문헌 인용은 할 수 없다. 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어가 반복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에 단어 전체를 기입하고 괄호 내에 약어를 표기한 후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초록 하단에 4개 이내의 KEY WORDS를 기입한다. KEY WORDS는 Medical Subject Headings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등재된 색인단어

중 선택하여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서론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 5) 재료 (또는 대상)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및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방법이 주요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결과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 (Table)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 7) 고찰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이에 연관된 다른 자료와 연관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약을 기술하며, 연구결과와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마지막 문단에 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기술한다.

## 8)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

저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작성, 통계 등 연구에 일부 참여한 자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기입한다.

## 9) 참고문헌

- 모든 참고문헌의 표기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출판된 학회지라 할지라도 영문제목과 영문 학회지명을 기입한다.
- 참고문헌은 가능한 한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 구성하며 최신의 논문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새 쪽에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 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 기록된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본문에서 인용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번호를 표시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의 어깨번호가 들어갈 때는 마침표(.) 다음에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 6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6인 이후에 “등” 및 “et al.”로 끝맺는다.
-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 참고문헌의 쪽은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 기술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출간된 논문의 기재 양식: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 쪽수

예 Hayakawa Y, Eraso FE, Scarfe WC, Farman AG, Nishikawa K, Kuroyanagi K, et al.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analysis of a newly revised rotational panoramic machine. *Dentomaxillofac Radiol* 1996; 25 : 302-6.

(2) 단행본의 기재양식: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도시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쪽수

예 Goaz PW, White SC. *Oral radiology; principles and interpretation*. 3rd ed. St.Louis: Mosby-Year Book Inc; 1994. p. 624-7.

(3) 단행본의 chapter의 기재양식: 저자명, chapter명, 편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도시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쪽수

예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Brenner BM.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Raven Press; 1995. p. 465-78.

(4) 인쇄 중인 논문의 기재 양식

예 Figueiredo PT, Leite AF, Freitas AC, Nascimento LA, Cavalcanti MG, Melo NS, et al. Comparison between computed tomography and clinical evaluation in tumour/node stage and follow-up of oral cavity and oropharyngeal cancer. *Dentomaxillofac Radiol* (in press).

(5) 논문초록의 기재양식

예 Mileman PA, Espelid I. Radiographic treatment decisions -a comparison between Dutch and Norwegian practitioners. *J Dent Res* 1986; 65 : 609 (Abstr 32).

(6) 편집장에게 보내는 글의 기재양식

예 Farman AG. Panoramic radiographic images and the prediction of asymmetry. *Dentomaxillofac Radiol* 2006; 35 : 129 (letter).

(7) 기타: Uniform Requirements (1997)에서 제시한 양식을 따른다.

## 10) 표 (Table)

-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의 상단에 기술한다. 명사와 형용사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 약자는 본문의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하단에 설명을 덧붙인다.
- 기호를 사용할 때 다음의 순서대로 이용한다: \*, †, ‡, §, ||, ¶, \*\*, ††, ‡‡
-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11) 사진 (Figure)

- 사진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 환자의 안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진단영상사진 등에서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등이 나오지 않게 한다.
-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다.

- 사진의 크기는 5×7인치(13×18 cm)로 통일하며, 광택 인화지를 사용한다.
- 사진 뒷면에 사진의 번호와 상하표시를 연필로 기입한다. 세게 눌러써서 전면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잉크나 볼펜 사용을 금한다.
-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사진인 경우,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 그림(line drawing)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인화된 사진으로 제출한다.
-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진 뒷면에 저자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 사진 배열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필요한 경우 기입할 수 있다.
- 사진 및 그림을 이메일 혹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모든 영상의 폭은 최소 5인치 이상을 권장하며, Photoshop이나 Illustrator 와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TIF나 최대 해상도로 압축한 JPG 파일로 제출한다. 칼라 및 진단 영상사진은 최소 300 dpi 이상, 그림(line drawing)은 최소 1200 dpi 이상을 권장한다. 디스켓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명과 사용 소프트웨어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 12) 사진 설명

- 본문의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방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 7.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 및 점검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 1) 종 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저자 혹은 연구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 2) 증례보고

초 록: 초록은 영어로 작성하되 150단어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하며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 항을 분리하지 않는다.

서 론: 서론이라는 제목 없이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보고: 임상소견은 영상진단에 직접 관계있는 사항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고 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단, 문헌고찰이 제목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그 주목적이 있으며, 학술대회장에서의 학술전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의 형식은 초록, 서론, 원저의 결과와 고찰에 해당하는 간략한 서술, 참고문헌, 사진설명 순으로 하며 감사의 글은 포함될 수 없다.

####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및 학회소식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 혹은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전공자의 일반적인 관심사항이나 학술분야의 특정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각 교실의 동정 및 변화, 각 분과학회의 학회일정이나 기타 공지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원고 채택 및 심사규정

- 1) 원고접수는 연중 무휴이며, 편집장에게 직접 보내도록 한다.
- 2) 접수 후 1주 내로 편집장은 게재규정에 적합한지를 1차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거나 반송하며 접수된 경우는 엽서로 저자에게 통보한다.  
\* 접수일은 편집장이 1차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한 날로 함.
- 3) 원고의 심사는 편집장이 지명한 심사위원 2명 이상이 하도록 하며 (투고논문 심사지침 참고),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 4) 심사위원들은 2주 내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편집장에게 반송한다.  
\* 심사의견 (1) 게재 ( )  
(2) 수정후 게재 ( ): 수정할 사항을 기술  
(3)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할 사항을 기술  
(4) 게재 불가 ( ): 반려하는 이유를 기술
- 5) 편집장은 심사의견과 수정할 사항이 기술된 원고를 수합하여 심사 결과서를 저자(들)에게 통보한다.
- 6) 수정 의견을 받은 저자(들)은 4주 내로 수정보완하여 편집 이사에게 재송부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편집장은 이를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7) 심사위원은 다시 2주 내에 재심사하여 편집장에게 반송한다.
- 8) 편집장은 재심사 결과서를 저자(들)에게 통보한다.
- 9) 저자(들)은 논문 심사후 게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수정이나 추가된 최종원고가 수록된 3.5인치 디스켓 1부(파일명, 제1저자명, 프로그램명 기록)와 프린트 된 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한다. 혹은 최종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편집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 10) 심사위원 상호 간 또는 심사위원과 저자 사이에 심한 의견 차이가 있으면, 편집장은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1) 기타 관련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윤리규정

2009. 01. 02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장, 제1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며 학회 이사 중 1인 이상을 선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학회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

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제15조 (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①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

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게재신청 및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 이전한다.

저자는 저작권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 저자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으면 타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논문을 밝힌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

제1저자 이름과 서명 / 년 월 일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제5저자

제6저자

제7저자

제8저자

제9저자

본 동의서는 기술된 순서대로 전 저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함.



##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투고원고 최종 점검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고 2부, 사진 2부 및 3.5인치 Diskette 또는 CD 등 저장매체를 동봉한다.
- 행간 여백 1행 (double space)에 21×31 cm (A4)용지에 작성한다.
- 원고배열은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된 표지, 내표지,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 사진설명의 순으로 한다.
- 영문초록 하단에 색인단어 (Key Word)를 기입한다.
-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전 저자가 서명한다.
- 투고규정내의 저자 점검사항을 점검한다.